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7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3.
3. 회부연월일 : 2024. 9.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블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

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로 하여금 보행환경개선지구 중 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②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歩道)용 방호(防護)울타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 ----- ----- ----- ----- -----.
1. ~ 6. (생략)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역에는 보도(歩道)용 방호(防護)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특별시장등이 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②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③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④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통행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 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음.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람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2. 해당 도로의 관리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최근 유동인구가 많고 통행환경이 개방된 서울 중심지역에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 중 보행자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②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반드시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보호자의 횡단 및 추락 방지 효과가 가장 높은 시설 중 하나인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해 보행환경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이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지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단순히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 경우 뿐만 아니라 주변이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거나, 집회 등의 행사가 자주 치러지는 광장인 경우 등과 같이 보행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일률적으로 ‘보도용 방호울타리’ 만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은 조치가 될 우려가 있어 보임.

특히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도용 방호울타리 뿐

만 아니라 말뚝, 블라드, 과속방지턱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므로 현
행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참고: 주요 보행안전시설물 등 현황]

			
보도용 방호울타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보호)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보행자 횡단방지 및 보행자 추락방지)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시설물 식별로 차량진입 억제)		강화된 블라드 (해외사례, 차량돌진시 방어 가능)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차로 폭 좁힘	지그재그형 도로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는 도로의 특성에 따라 방호울타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해당 지역의 보행환경,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